

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04.21]
(일부개정) 2022.04.21 조례 제1690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감사관
관리책임전화번호 : 062-960-8070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 처리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, 시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2.4.21.)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민원인”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2. “민원”이란 민원인이 구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.
3. “고충민원”이란 구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(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)인한 시민의 권리침해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설치) 광산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권리구제, 권익보호, 고충민원 해결 및 감사 참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조사
2.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
3.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과 중재
4.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
5. 민원 안내·상담 및 민원처리 실태 조사·지원 등
6. 그 밖에 구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공개모집한 후, 구청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일반행정 및 재무행정, 사회복지·농업·도시·환경·건설·건축행정 등 전문가
2.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3. 시민단체 등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하는 사람
4. 장애인, 아동, 청소년, 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전문가
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가 위원과 직·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·의결 시 해당위원은 제척된다.

② 위원회가 조사하는 고충민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(법인 등을 포함한다)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(개정 2022.4.21.)

③ 위원이 안전을 심의·의결하거나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위촉 해제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
2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
3.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4. 위원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
5.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
제9조(위원장 등의 소관 사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조사협력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 다만,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제11조(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·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(개정 2022.4.21.)

제12조(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·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·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(신설 2022.4.21.)

제13조(처리결과와 통보 등)(신설 2022.4.21.) ① 위원회로부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면책)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, 운영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광주광역시광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을 따른다.

제15조(연차보고서 제출 및 공개) ① 위원회는 매년 전년도 운영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성과
2. 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, 조사, 심사내용 및 그 처리결과
3. 위원회의 시정권고, 의견표명, 제도개선요구 사항 및 그 처리결과
4. 위원회 위원의 감사 참여 및 자문 사항
5.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사항
6. 민원 안내·상담 및 민원처리 실태 조사·지원 사항
7.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

제16조(사무기구)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. 다만,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.(신설 2022.4.21.)

제17조(수당 등) 위원 및 제9조에 따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비밀유지 의무)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(개인정보를 포함한다)을 누설하거나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

제19조(운영규칙) 위원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4.21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